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8년 3월 23일

신한BNPP중국더단기증권투자자산신탁제2호(H)[채권-재간접형]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 - 1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
  -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  - 3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  - 4 위험고지문구 수정
  - 5 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(모투자신탁 포함) - 박재우(책임운용역), 임지윤(부책임운용역)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(모투자신탁 포함) - 탁하진 (책임운용역), 임지윤(부책임운용역) 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18년 2월 28일)</b>
2.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자산 규모 업데이트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<b>운용자산 규모-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8년 2월 28일)</b>
3.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b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)</b>
3.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<b>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직전회계연도 및 2018년 2월 28일)</b>
4. 위험문구 수정: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 <중국 본토채권 매매 차이 과세 위험>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본토 채권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중국 본토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 향후 중국 과세당국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국본토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본토 채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다.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각 종목별 매매차익금액의 10%,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각 종목별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다.  <과세 준비금 유보 관련 위험>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 <중국 본토채권 매매 차이 과세 위험>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본토 채권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중국 본토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  <과세 준비금 유보 관련 위험> <삭제>
5. 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.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, 신용위험, 유동성위험,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. 해당 펀드를 각 위험 별로 평가한 후 총괄하여 원본손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등급, 높은 경우 2등급, 다소 높은 경우 3등급, 보통인 경우 4등급, 낮은 경우 5등급, 매우 낮은 경우 6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<b>6개의 위험등급 중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.</b>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<b>5.55%이며 4등급</b> 으로 분류됩니다.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 - 1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
  - 2 최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
  - 3 위험고지문구 수정
  - 4 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	제2부 I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(모투자신탁 포함) - 박재우(책임운용역), 임지윤(부책임운용역)	제2부 I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(모투자신탁 포함) - 탁하진 (책임운용역), 임지윤(부책임운용역) - <b>최근현황갱신(기준일: 2018년 2월 28일)</b>
2. 최근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	제2부 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	제2부 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 <b>최근 현황 갱신</b>
2. 최근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	제1부 보수 및 수수료	제1부 보수 및 수수료 - <b>최근 회계 연도 기준 갱신</b>
4. 위험문구 수정:	제2부 II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. 주요투자위험 <중국 본토채권 매매 차이 과세 위험>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본토 채권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중국 본토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 향후 중국 과세당국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중국본토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 본토 채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및 평가이익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준비금으로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다. 과세준비금은 매매차익의 경우 각 종목별 매매차익금액의 10%,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의 경우 각 종목별 평가차익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보 및 적립하게 됩니다.  <과세 준비금 유보 관련 위험>	제2부 II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. 주요투자위험 <중국 본토채권 매매 차이 과세 위험>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QFII 및 RQFII를 통한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중국 본토 채권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중국 본토 채권 투자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중국과세당국의 과세정책, 세율, 적용시기, 소급과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.  <과세 준비금 유보 관련 위험> <삭제>
4. 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	제2부 II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.	제2부 II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<b>5.55%이며 4등급</b> 으로 분류됩니다.